

#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차선자\*\*

## 목 차

- I. 머리말
  - 1. 문제의 제기
  - 2. 여성주의·범여성학 그리고 젠더 법학
- II. 젠더법학의 특징
  - 1. 인적 집단 대상의 통합법학적 특성
  - 2. 실천법학으로서 젠더법학
  - 3. 기초법학으로서 젠더법학
  - 4. 사회과학과의 접점으로서 젠더 법학
  - 5. 개념의 새로운 정초를 위한 시도로서 젠더법학
- III. 젠더법학 교육의 전개
  - 1.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의 젠더법학 교육
  -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 IV. 젠더법학 교육의 한계
  - 1. 물리적 제약
  - 2. 심리적 공감의 문제
- V. 맺음말

## [국문 요약]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이상적인 젠더법학 교육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젠더법학의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전제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젠더법학은 기존의 법학이 법체계에서 젠더분석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법적중립성이 구현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전제 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법질서 전체에서 젠더와 법의 관계를 분석하여 진정한 법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이 글은 2010년 12월 17일 한국법사학회 주최로 열린 기초법학 관련 학회 연합학술대회 “법학전문대학원 체제 하에서의 기초법학 교육”에서 발표한 원고를 수정한 것이다.

\*\*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젠더법학회 회원

입법과정부터 권리 구현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범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젠더법학의 교육은 단순한 법해석론 중심의 이론 교육보다는 복합적 관점과 다양한 당사자 주장이 교차하는 문제에 내제된 젠더차별을 분석하는 토론식 수업이 적절할 것이다. 또한 글쓰기를 통한 세미나 방식의 수업도 이상적인 교육방법론일 것이다. 이러한 학습을 통하여 젠더 문제에 대한 수강생 각각의 내제된 편견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 수업의 지향점이 될 것이다.

[주제어] 교육방법론, 기초법, 사회과학, 여성주의, 젠더법학, 정치사상

## I. 머리말

### 1. 문제의 제기

우리나라에서 법학교육을 학부과정이 아닌 대학원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미 1995년도부터 논의가 되어 왔다. 전문대학원 체제로 법학교육방식의 전환을 계획하게 된 것은 시험 중심의 법률가 양성 방식이 대학에서의 법학교육과 연계되지 못하는 현상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험에 의한 선발제도가 고도 산업사회에서 점차 전문화·복잡화되는 분쟁을 해결하는데 적합한 법률가를 배출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면서 부터이다.<sup>1)</sup> 이러한 문제의식을 전제로 국민들에게 좀 더 접근이 용이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분야마다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학생을 대상으로 법학을 교육하여 문제해결 능력이 있는 법률가를 배출하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 체제로 교육방식의 전환이 추구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교육방법론의 측면에서 보면 기존의 법과대학에서 이루어진 이론 중심의 해석법학교육을 통해서는 점차 전문화·복잡화되는 법률분쟁을 적절히 이해하고 문제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의 기능을 적절하게 구현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식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1) 최대권, 『법학교육·법학교육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박영사, 2003), 21면 이하.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학교육은 이론의 습득이외에도 사실에 대한 이해와 접근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법학교육방식의 전환이 추구하는 이러한 본연의 목적을 충실하게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학 이외의 다양한 사회과학 및 자연과학 분야와 학제간 연구가 더욱 다양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법학교육 방식의 전환이 추구하는 것이 기존의 해석법학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학제간 교류를 통하여 사회현상에 대한 이해와 문제해결력을 강화하는 것을 기획하였다는 점에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기초법의 교육은 도리어 강조되어야 하며 또한 그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sup>2)</sup>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원되고 2년 정도 지난 지금 기초법의 교육에 대하여 다시 논의가 되어야 하는 배경은 무엇인가? 그것은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교육과정이 전환된 것이 기초법 교육에 어려움을 주는 것이라기보다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이 전문대학원 체계로 전환하게 된 원래의 목적대로 구현되지 않고 왜곡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변호사 시험 대비의 장으로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이 전환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험과목 중심의 해석법학이 아닌 과목이 어떻게 그 의미를 부여하고 원래의 교육의 의미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 법여성학의 교육방법론을 논의하는 배경의 맥락도 이와 동일할 것이다. 이러한 전제에서 법여성학 교육방법론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 글은 다음을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 법학전문대학원으로서의 교육방식 전환이 의도한 본

2) 사실상 법학전문대학원 인가 신청서 다양한 교과목의 개설은 중요한 검토사항의 하나이었으며, 학제 간 연구가 가능한 분야에 대한 과목 개설도 강조 되었었다고 본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경우 이러한 과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 예로, 차별금지법, 인권발전사, 법학방법론, 법사상사, 전통법의 정신, 여성과 인권, 사회보장과 인권, 전통법문화의 이해, 생명윤리와 의료형법, 소수자 인권법, 과학기술과 인권, 농어민분쟁실무, 법사회학, 법여성학 등의 분야가 개설 예정과목으로 소개되었었다.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인가 신청서(2007), 453-455면.

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며 이것이 법여성학 교육방법론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한국에서 법여성학 교육은 법여성학이라는 분야를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멀리는 1970년대부터로 그 시작을 볼 수 있다. 그사이 법여성학 교육은 각각 교육의 대상과 목적이 달라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시기 별로 법여성학 교육이 지향하였던 점과 교육방법론을 검토하고 이것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법여성학 교육 목적과 비교함으로써 교육 방법론에 어떠한 변화가 요구되는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험대비과정으로 왜곡되어 가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의 현실에서 법여성학 교육의 의미는 무엇이며 그 방법론 또한 본래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려고 하였던 교육목적과 방법론은 어떻게 구현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교육의 구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먼저 법여성학의 학문적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법여성학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의 여부에 의하여 구체적인 교육 방법론의 변화와 향후 바람직한 교육방법론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이를 토대로 법여성학 교육의 흐름을 검토하여 법학전문대학원으로 전환되기 이전의 법여성학 교육방법론과 법학전문대학원 체계에서 법여성학 교육의 의미를 대비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개원 이후 점차 왜곡되어 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에서 법여성학이 어떻게 교육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경험에서 느끼는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다만 이 글에서의 교육 방법론은 이론화되어 있는 법여성학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지 않다. 아직 정석화되어 있는 법여성학의 교육방법론의 확립이 완성되지 않았다고 보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이 존재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현실에서 조금이라도 더 적절하다고 보는 법여성학 교육방법을 구현해 보고 그 경험을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 단계로 보기 때문이다.

## 2. 여성주의 · 법여성학 그리고 젠더 법학

법여성학이 대학에서 강좌개설된 것은 이미 50년대 중반부터이다. 초기에는 교양과목으로 개설되어오다가 점차 법과대학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개설되고 있다.<sup>3)</sup> 명칭은 ‘법 여성학’, ‘여성과 법’ 또는 ‘남녀평등과 법’ 등의 명칭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분야에 대해 영미권에서는 ‘Feminist jurisprudence’, ‘Feminist Legal Theory’, ‘Gender and Law’, 또는 ‘Women and Law’ 등으로 표현하고 있다<sup>4)</sup>. 우리나라에서 ‘법여성학’이라는 명칭으로 법과 대학에서 강좌가 개설되는 것은 위의 용어를 번역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든지 이 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은 여성의 시각을 가지고 법질서를 재검토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존재가 부각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법학에서 여성이 강조되는 이유는 ‘여성’ 문제를 다루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만은 아니다.

법질서에서 여성의 시각이 강조되는 더 본질적인 원인은 기본적으로 법이 남성의 경험과 세계관을 전형성으로 근거 하여 성 편향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결과 중립성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있다<sup>5)</sup>. 법학에서 여성이 강조되어야 하는 이유는 이처럼 성편향적인 법질서를 진정한 중립적 가치로 환원하기 위

3) 50년대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교양과목으로서 ‘여성과 법률’이 개설되었다고 한다. 김선옥, 「법여성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강법학』 제4권(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262면. 법여성학이라는 명칭으로 법과대학에서 강좌가 개설된 것은 1997년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전공 선택 과목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후 외국어대는 2000년, 국민대는 2001년, 서울대는 2003년, 전남대는 2004년에 각각 전공선택으로 개설하였다. ‘법여성학’ 또는 ‘여성과 법률’이라는 명칭으로 과목을 개설하고 있는 곳은 건국대, 고려대, 국민대(성과 법률), 명지대, 부산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이화여대, 전남대, 중앙대 등이 있다. 김숙자, 「여성교육과 법여성학 - 한국의 법여성학을 중심으로 -」, 『여성가족생활연구』 제11집(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7), 12면, 각주 18) 인용.

4) 콜럼비아 대학은 Feminist Legal Theory workshop, 코넬 대학, Feminist Jurisprudence, 하버드 Critical Perspectives on Law, Reproductive Rights and the Jurisprudence of Equality, Employment Discrimination Law, Equality, 오래근과 뉴로첼의 경우에는 Women and the Law 등으로 개설하고 있다. 김엘림, 「법여성학 교육의 사례」, 『한국젠더법학발표집』(한국젠더법학회, 2006), 145면.

5) 최일숙, 「미국 여성주의 법학의 소개」, 『젠더법학』 제1권 제1호(한국젠더법학회, 2009), 49면.

함이다. 궁극적으로 법여성학은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에 따라 각각의 경험과 그로부터 형성된 사고체계의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이 차이를 법체계에 반영하여 법의 진정한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본다.<sup>6)</sup> 따라서 젠더와 법의 관계를 논의하고 교육하는 것을 지향하는 것이므로 법여성학이라는 명칭보다는 “젠더 법”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법여성학’ 대신에 ‘젠더법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로 한다.

## II. 젠더법학의 특징

젠더법학은 법체계로 규정될 수 있는 범위 전체, 즉 입법에 이르는 과정,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법규정, 법규정에 대한 해석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정 단계, 그리고 권리의 절차적인 보장과정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범위에서 젠더인식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sup>7)</sup>. 그 구체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 
- 6) 김선옥, 앞의 글, 267면. 이것은 최근에 여성정책의 관점이 여성 중심 시각에서 여성과 남성 모두를 그 대상으로 전환하고 모든 정책 결정에서 성인지 분석을 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김선옥, 「성주류화와 법」, 『젠더법학』 제1권 제1호(한국젠더법학회, 2009), 2-3면. 여성정책에서 성주류화 정책으로의 전환이 법에 대하여 시사하는 것은 기존의 여성권의 중심의 법과 제도 정비 단계에서 법질서 전체에 대한 젠더의 영향과 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개념, 조건, 법적용의 효과 등을 분석하는 것으로 이 분야가 전환되는 것이 이상적임을 의미할 것이다.
  - 7) 젠더법학 또는 여성주의 법학으로 표현되는 이 분야는 이미 세계적으로 법학의 새로운 이해 방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법에서 젠더법학은 여성주의 운동의 전개방식과 맥을 함께 하면서 평등의 시대(70년대), 차이의 시대 (80년대), 다양성의 시대 (90년대)로 각각 그 접근 방식의 차이를 보이면서 전개되어왔다. Marthas Chamallas, *Introduce to Feminist Legal Theory*, New York : ASPEN, 2003 참조. 반면에 대륙법을 취하고 있는 독일의 경우 여성주의적 분석 방식은 법학 보다는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 먼저 발전하였으며 최근에 법학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길지 않은 역사와 함께 여성주의 법학의 실체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중에 있는 과제로 남겨져 있다. 특히 미국에서의 여성주의 법학이 평등권을 중심의 법적 논쟁점을 중심으로 발전되어 왔다면, 독일과 같은 대륙법 국가에서는 상대적으로

## 1. 인적 집단 대상의 통합법학적 특성

인적집단의 특성, 지위 그리고 능력에 관한 법적인 근거는 개개인의 보편적인 권리와 특별한 그룹의 법적 지위 양자 모두와 관련하여 법학의 오래된 주제이었다. 아동, 지적 능력이 부족한 자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자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는 이미 법학의 고유의 영역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러한 인적 그룹의 특성들과 비교할 때 여성이라고 하는 그룹은 매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성은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매우 거대한 인구의 일부이며 동시에 다양한 하부 그룹으로 구성되어 지는 존재이다. 아동법의 경우 법령의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입법적인 보호를 주는 것과 같이 인적 집단의 특성에 기초한 분야는 형식적인 법에 그 집단의 고유의 특성을 정의한다. 그러나 여성주의 법학은 형식적인 실정법에서 그러한 보호를 위한 기준들은 거의 드물게만 발견된다.

도리어 여성은 모든 관계를 통하여, 가장 내면적이고 사적인 분야에서부터 공개되고 공적인 분야에 이르기 까지 여성으로 정의된다. 여성의 삶의 범주가 공·사법의 영역 전체에 걸쳐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법여성학은 사법과 공법 분야는 물론 법의 다면적 분야들 속에 경계를 가로지르는 학문적 분과가 된다.<sup>8)</sup>

## 2. 실천법학으로서 젠더법학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젠더법학이 발전해온 역사적 배경을 검토해 보면 그 실천주의적 특성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젠더법학은 호주제폐지, 동성동

---

성문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여성주의적 관점이 수용되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오늘날 사실상 법문에서 양성을 명시적으로 차별하는 규정의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중립적으로 보이는 법규정 이면의 차별성을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Sacksofsky, *Was ist feministische Rechtswissenschaft?*, ZRP 2001, 412 ff.

8) Tove Stang Dahl, *Women's Law*,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8, pp.28-30.

본 불혼금지 운동, 및 성매매특별법의 제정운동 등의 활동에서로 알 수 있듯이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성 평등 운동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실천주의 법학으로서의 역할을 해왔다. 따라서 젠더법학은 여성운동과 역사를 함께 한 실천법학으로서의 특징이 교육과정에서도 반영되도록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 3. 기초법학으로서 젠더법학

기초법학을 무엇으로 정의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법학에 대한 분류에서 전체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지난한 과제일 것이다. 다만 2007년 발표된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상의 표준과목군은 ①기본법학과목, ②기초법학 및 인접과목, ③전문법학과목, ④실무기초과목으로 나뉘며, 이 중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은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과목과,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새로이 제기되는 법적 과제들에 대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과목으로서 여기에는 법철학·법사학·법사회학·비교법학·북한법 및 외국법에 관련된 과목들이 포함되고, 인접과목에는 법과 관련된 다양한 학문영역(경제학, 인류학, 정치학, 행정학, 심리학, 통계학, 경영학 등)에 관련된 과목이 포함된다고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및 교수법 개발 연구결과에서 정의한 기초법학 및 인접과목의 분류와 유사하게 일반적으로도 기초법학은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법이론, 공익·인권법, 생명윤리, 법여성학<sup>9)</sup>, 이외에도 법문학, 법심리학, 법미학, 법경제학, 법인류학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 된다<sup>10)</sup>.

기초법학을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적이고 대상적인 분야로 정의하면 여성주의 사상을 수업하는 것은 젠더법학의 기초법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초법을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 데 필요한 학습으로 이해할 경우에도 젠더법학이 기존의 남성 중심적 법체계를 새로운 젠더 중립적 시각을 부여하여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법 형성과 법 발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기초법학으로 정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젠더법학은 법체제로 정의될 수 있는 범위 전체, 즉 입법에 이르는 과정, 입법으로 구체화되어 있는 법규정에 대한 해석론, 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사실 확정 단계, 그리고 권리의 절차적인 보장과정에서의 차이점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범위에서 젠더인식이 법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여기서 의미하는 젠더인식이란 법체제로 정의될 수 있는 사회시스템에서 성평등과 존엄성이 구현되고 있는지 검토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언급된 어느 단계의 문제에 대해서 젠더분석을 시도하든지 궁극적으로 성평등과 존엄성구현이라는 법의 가치에 관한 질문으로 회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법에서 개념을 이해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의 젠더에 따른 개념의 다의성의 가능성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이를 중립적으로 교정하고자 노력한다는 점에서 젠더법학은 법철학적 사유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 
- 9)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체제로서 기초법과 의사소통으로서 기초법 강의-」,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한국법철학회, 2008), 각주 1)에서는 기초법의 내용을 법철학, 법사학, 법사회학, 법이론, 공의·인권법, 생명윤리, 법여성학 등으로 법학의 학문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분야이며 철학, 사회학, 사학, 의학, 여성학 등 여러 학문영역과 학제적 연구를 할 수 있는 분야로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필자가 기초법학 분야를 내용을 달리하는 학습 분야로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10) 이들 분야는 기초법학으로 분류되고 있다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다소의 차이는 있다. 즉 법철학에 비교할 때 ‘법여성학’은 상대적으로 신생학문분과에 해당한다. 이러한 이유에서 법철학을 기초법학의 총론적 지위를 갖는 것으로 놓고 나머지 기초법학과목들을 각론적 지위를 가지는 것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 기초법학 체제로 보는 입장이 있다. 이상돈, 『기초법학』(법문사, 2010), Ⅲ편.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젠더법학이 입법을 통하여 구체화된 범규정에 대한 젠더분석을 시도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 여성의 경험과 여성이 처한 상황에 비추어 현행 실정법의 규정이 얼마나 허구적인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등의 시도는 법사회학적인 논증구조와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또한 법을 적용하기 위한 사실 확정의 단계에서는 관습화되고 정치화된 개인의 사고가 법의 적용의 전제로서 사실 확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의 상관관계와 여기서 개입되는 젠더의식을 고려하는 분석은 다분히 옳음에 대한 가치적 논쟁이나 사회적 현실과 구조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도리어 특정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인지에 관한 문제로 접근할 때 적절하게 이해될 가능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다분히 인지과학적 법이해를 요구한다.<sup>11)</sup>

나아가 법에서 젠더에 대한 이해를 다른 하나의 방법론은 법사학적 접근방식이라고 본다. 우리는 남녀의 사회적·경제적 조건이 변화함에 따라서 그와 관련된 법적 틀도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를 함께 공유해 왔다. 19세기 미국여성들이 부부재산의 별산제를 주장해온 것과 20세기에 다시 부부재산의 공유를 주장하게 되었던 배경은 모두 남성과의 관계에서 평등을 추구하고자 하는 시

11) 법과 인지를 연결하여 생각할 때 논의되어야 하는 다양한 주제들로 제시되는 것은 법 제정의 인지적 기초, 법규의 이해 및 기억, 법규에 대한 지식, 이에 근거한 실제상황에서의 판단과 결정, 법규를 기억하는 가의 여부, 법과 관련하여 실제로 개개인이 자신의 행동을 제어하는 측면, 법과 실제행동 사이의 간격, 여기에 행위자의 고의의 개입여부, 고의의 본질과 작용방식, 법조문의 이해와 해석에 대한 언어학적 기초, 법조문을 포함한 인간 언어에 의미가 연결되는 본질적 과정이 메타포적 과정이라는 언어학적 이론과 맥락, 법의 실제와의 관계, 이러한 관점을 법학과 법의 실제적응상황에 도입하는 문제, ...사회적 고정관념과 기타 편향의 개입... 등을 지적하고 있다, 이정모/손지영, 「법인지과학 : 법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2010), 32면. 발표자는 성편향적 사회적 고정관념의 개입 문제를 법에서 논의하기 위한 일차적인 지점은 그동안 규범학이라는 이유에서 법의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대접받은 사실의 단계에 대한 겸허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특히 사실인식에서 젠더의식의 문제는 인식과정에서 맞이하게 되는 관습화된 사고가 가져오는 성편향적 이중기준을 무의식적으로 적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위험성을 의식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사실은 매우 자주 왜곡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도였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논리이지만 그 시대마다 여성에 대한 정의와 이해가 달라지면서 부부재산제 또한 변화가 초래된 것이다<sup>12)</sup>.

젠더법학의 문제를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론의 입장에서 기초법학의 타 분과들과의 관계를 보면,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법학이라는 범주에 법철학적 사유에서부터 법사회학, 법사학 등 다양한 기초법 분야의 방법론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사학 등 기초법의 다른 분야가 각각의 고유의 영역과 방법론을 비교적 명확히 가지고 있다고 인식되는 것과 다소 차이가 있다. 젠더법학이 관점에 대한 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지는 특성일 것이다.

#### 4. 사회과학과의 접점으로서 젠더 법학

언급한 바와 같이 젠더법학은 다양한 기초법학의 분야들의 방법론을 가지고 젠더 관점의 재해석이라는 과제를 접근하기도 하지만 또한 기초법학의 분야를 넘어서는 다양한 사회과학과의 교류 또한 필수적으로 요구한다.

예를 들어 장애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것을 주제로 수업을 할 경우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에서 장애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해오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전제되어야 하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존엄성 침해가 나타나는 지점에 대한 이해,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차별의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이해, 현행법에서 성폭력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 보호법의으로서 성적자기결정권을 판례가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그리고 성적자기결정권이 가지는 함의에 대한 여성학에서의 논의를 검토할 때 장애여성에 대하여 가해지는 성폭력에 숨어 있는 성과 장애에 대한 편견을 분석할 수 있다. 만

12) 수잔 웨스터버그 프래거, 「부부재산법에 대한 시각변화」, 베리소운/매릴린 알툼 역음/권오주 외,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한울, 2003), 164면 이하 참조.

일 장애개념에 대한 이해와 장애학에서 여성장애인이 가지는 공간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그 이해는 절반의 이해에 불과하다.

특히 지적장애와 신체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의 특수성을 젠더 시각에서만 분석하는 것은 한계를 가질 것이다. 장애 개념이 역사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과 현재 장애를 정의하는 방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국제 장애인권리협약은 장애인을 “다양한 장벽과의 상호작용으로, 다른 사람들과의 동등한 기초 위에서 완전하고 효과적인 사회 참여를 저해하는 장기간의 신체적, 정신적, 지적, 또는 감각적 손상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장애인권리협약 제1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약의 장애인 개념은 최근의 장애에 관한 개념을 개인적 선천적인 속성에서 찾기 보다는 사회환경과의 부적절한 상호작용에서 찾는 ‘사회적 모델’ 중심의 개념을 설정한 것으로, 이러한 입장에서 ‘지적장애여성’에 관하여 이해를 한다면 ‘지적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단순히 선천적 지능의 한계를 가진 여성의 문제로 이해하지 않을 수 있는 또 다른 이해 방식의 가능성이 발생한다. 특히 지적장애와 개인의 판단 능력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지적) 장애여성에 대하여 가해지고 있는 성폭력 사건에 대한 적절한 판단은 한계를 나타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지적장애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하여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성폭력 판례는<sup>13)</sup> 다양한 사회과학 분과와의 교류가 젠더법학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따라서 젠더법학의 교육에도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13) 공익변호사그룹 공간의 직원연구원은 1988 부터 2010년 사이에 장애여성이 피해자인 성폭력 사건 216건의 판례를 분석할 결과, 유죄판결은 214건, 무죄판결 39건, 공소기각 8건으로 무죄율이 15.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은 2004. 5. 27, 2004도1449 에서 지적장애 1급 여성에 대한 성폭력을 피해자는 지적능력이 정상인에 미달하기는 하지만 사고능력이나 사리분별력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고 성적인 자기 결정 능력이 있으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데 불과 하다는 취지에서 피해자를 성폭력특별법 제8조의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지적장애 1급에 대한 법원의 이해가 부족함을 보여주는 예이다.

## 5. 개념의 새로운 정초를 위한 시도로서 젠더법학

젠더법학과 다양한 사회과학의 교류가 중요하게 요구되는 원인의 하나는 법질서가 사용하는 인위적인 개념에 대한 여성주의적 재해석과 새로운 개념정립의 과제를 부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어떤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새로운 방법으로 체계화하고 새로운 개념이 만들어지는 것을 강조하게 된다. 여성주의 법학에서 이러한 시도는 특정 개념이 여성주의 관점이 제공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새로운 개념으로 성장되는 것으로 귀결된다. 예를 들어 여성주의 법학에서는 ‘평등지위(equal status)’라는 개념은 법률상 그리고 사실상 평등지위로 분열된다.<sup>14)</sup> 법질서는 남성의 삶을 전형적인 모델로 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외형상 중립적으로 표현하지만 사실상 남성적 상징질서로 이해할 수 있다.<sup>15)</sup> 그리고 남성적 상징질서인 법에서의 ‘개념’도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의될 개연성이 높다.

그러므로 젠더법학은 이러한 남성화된 ‘개념’을 중립적인 개념으로 다시 정의해야 하는 과제를 부여 받는다. 예를 들어 젠더법학은 법에서 전제하는 노동의 개념이 여성의 노동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면 새로운 유형의 노동개념을 법질서에 제안하고 이것을 통하여 진정한 성 중립적인 노동개념을 법에서 수용하고 이를 전제로 노동 관련법을 이해하도록 시도하는 과제를 부여받을 것이다. 성폭력에 대한 개념이 남성의 경험을 중심으로 정의되었다면 젠더법학은 여성의 경험을 함께 고려하여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재정립하여야 한다.

14) Tove Stang Dahl, 앞의 책, p.35.

15) 이리가레이는 이러한 이유에서 여성이 남성적 사회에서 독자적인 시민으로 법적 동질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성을 차별화한 시민권이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김태선/오정진/조은희/차선자, 『법여성학』(세창출판사, 2011), 45면.

### Ⅲ. 젠더법학 교육의 전개

#### 1. 법학전문대학원 이전의 젠더법학 교육

여성들에 대한 법률문맹 퇴치 전략은 「나이로비 미래전략에 관한 검토 및 권고」에서 제시되었다. 그리고 유엔여성지위위원회는 1990년에 행한 「나이로비 미래전략 이행의 제1차 검토 및 평가에 따른 권고」에서 각국 정부 등이 여성의 법률식자능력 (Legal Literacy)을 증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첫 번째 권고 사항으로 요청한 바 있다.<sup>16)</sup>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이미 1950년대부터 대학에서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이 시작되었다. ‘여성과 법률’ 등의 명칭으로 대학에서 강의가 개설될 때 그 목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법률지식을 접할 기회가 적기 때문에 법을 알지 못함으로써 법률상의 권리를 찾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으므로 여성 스스로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률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다.<sup>17)</sup> 여성과 법을 교육하는 이 과목의 강좌 개설의 취지와 부합하도록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이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목적에 따라 여전히 여성에게 자주 부딪치는 법률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로 구성되었다. 이 시기에 ‘여성과 법률’ 교육은 단순한 법률지식의 전달에 국한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시에 ‘여성과 법률’의 교육 내용은 각 분야별로 여성이 접할 수 있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sup>18)</sup> 법여성학은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 교육이 아니라 법

16)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1993), 221-222면.

17) 우리나라의 ‘여성과 법률’ 교재의 다수가 이러한 취지를 밝히고 있다. 초기 ‘여성과 법률’의 초기 저술인 1956년 김춘봉, 여성의 법률 서문에도 여성이 법을 알지 못하여 당하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교재 집필을 하고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김춘봉, 『여성의 법률』(삼협문화사, 1956). 최근에는 여성에 대한 대학 교육이 보편적화 되면서 여성들이 사회생활 과정에서 법지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부각시키기도 한다. 박정기·김연·김인유, 『여성과 법률』(법문사, 2006), iv면.

제도를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성평등한 법제도를 재구성하기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이 단계에서 여성과 법률 교육을 여성주의 법학 교육으로 정의할 수 있을지는 매우 회의적이다.

그러나 1970년대가 되면서 여성주의이론과 법과의 관계를 인식하는 저술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 시기에 여성주의 관점에서 법제도를 고찰하려는 시도가 시작되었다.<sup>19)</sup> 법여성학의 학문적 방향이 여성에 대한 법률 교육이 아니라 여성주의 이론에 의한 법제도 분석으로 전환되면서 교육대상과 방법이 기존의 ‘여성과 법률’ 교육과 차별화 되었다.

여성에 대한 법률교육의 목적과 의미는 법에 대한 여성주의적 분석과 구별되는 것이므로 후자가 시작된 시점을 젠더법학 교육의 출발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비로소 1990년대부터 법과대학에 전공 선택으로 강좌개설이 되면서부터 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공 선택으로 ‘법여성학’이 대학에 개설되면서 비로소 단순한 법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기 보다는 여성의 경험을 축으로 이것과 객관적이라고 칭하여지는 법규범의 괴리를 설명하고, 이에 의문을 제기하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여성의 경험을 이론으로 재구성하고자 하는 것, 즉 사교의 재구성을 추구하는 과정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sup>20)</sup>

18) 여성과 법률 교재를 대상으로 이 분야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관한 검토는, 차선자,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법학교육과 법과 젠더의 관계」, 『법학논총』(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6), 162-170면.

19) 법제도에 대한 여성주의 관점의 분석이 시도된 여성과 법률 교재는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1972), 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여성에 필요한 법률문제들을 소개하기에 앞서 여성주의 이론을 설명하고 있다. 이은영 교수는 여성주의 연구가 법학과 접목하여 법여성학을 탄생시켰다고 본다, 이은영, 「한국 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양현아 편,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사람생각, 2004), 33면.

20) 차선자, 앞의 글, 173-176면, 한국에서 젠더법학의 교육방법론에 관한 사적인 고찰은 상대적으로 젠더법학이 차지하는 학문적 위치가 현재성으로 이야기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 2.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의 교육

### 1) 교육대상자의 변화와 교육의 목적

법학을 전공하는 하는 대상자들에 대한 젠더법학 교육은 젠더관점에서 법체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은 이미 언급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젠더법학의 교육의 목적도 이와 다르지 않다. 다만 이러한 교육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한 체계적 교육 방법론이 무엇일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교육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젠더법학의 교육 대상자는 법률실무가가 되기 위하여 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다. 이들에게 젠더법학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문제의 다변화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실정법 중심의 기본과목 강의만으로는 젠더문제의 특수성을 모두 이해 할 수 없고 또한 젠더문제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고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특정한 문제를 적절하게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함께 한 것이라고 본다.<sup>21)</sup> 이러한 점을 전제로 학생들에게 젠더문제와 관련하여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범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여 문제 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젠더 법학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되어야 하는 원인일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젠더법학은 분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한 결과로서의 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젠더화된 사고체계를 분석틀로 대상이 되는 법규정 또는 판례를 재구성하는 사고적 훈련 과정이 요구된다. 즉 젠더법학은 정해진 결과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정으로서 사고를 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다.

21) 예를 들어 성희롱과 같은 분야는 당사자가 문제를 인식하고 법적 문제로 전환하는 과정과 대법원(대법원 1998. 2. 10. 95다39533)이 이를 새로운 유형의 불법행위로 판단한 과정에서도 여성주의적 분석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 2) 교육방법론의 다양화와 각각의 지향점

젠더법학의 교육방법론에 대한 검토에 앞서 명확히 되어야 하는 점은 젠더법학 교육방법론은 젠더법학 방법론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이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젠더법학의 방법론에 대하여 바트렛은 여성주의 방법론이 곧 여성주의 법학의 목적이라고 하였다. 여성주의 법률가 역시 귀납, 연역, 유추, 가설, 등과 같은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그 사실에서 핵심적 성격을 색출하고, 다툼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원리를 결정하며, 그 사실에 이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성주의 법학자는 전통적인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여성문제가 무엇인지를 묻고, 여성주의적 실용적 추론을 사용하거나, 의식고양을 통한 인식방법 등을 사용한다고 하였다.<sup>22)</sup> 나아가 바트렛은 여성주의 법학자의 인식의 근거로서, 합리적/경험적 위치, 전망 인식론, 포스트모더니즘, 위치성을 제시하고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관찰자에서 특정의 위치를 가진 존재라는 인식으로 여성주의 법학의 인식론이 변화되어 왔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sup>23)</sup>

바트렛이 여성주의 방법론이 곧 여성주의 법학의 목적이라고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방법론은 젠더관점에서 법을 인식하는 수단이며 동시에 젠더법학 수업의 내용을 구성한다. 그러나 그 자체가 젠더법학 교육방법론을 구성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여성의 경험 들어내기’ 또는 ‘의식고양과 같이 중

22)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앞의 책, 82-83면.

23) 바트렛이 여성주의 법학의 인식방법으로 이러한 것을 제기한 것은 여성학적 인식론이 남성적 사고방식에 도전하면서 제기한 학문적 인식의 방법론과 맥락을 함께 하는 것으로 본다. 현대 여성학자들의 인식론과 반근본주의자와 탈근본주의 사이에는 많은 유사성이 있는데, 양자 모두 단선적인 합리주의적 인식 모델을 거부하며, 논의의 다양성을 주장하고 있다. 양자 모두 계몽주의적 사고의 이분법 - 특히 주체와 객체라는 인간의 양분법을 논박하며, 계몽주의적 합리주의를 전형적인 남성중심적 사고방식임을 지적한다. 박의경, 「여성학적 인식론의 발견과 그 사상사적 지평」, 박의경/진재교 편,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청어람 미디어, 2004), 67면.

요한 젠더법학 방법론의 구현은 토론식, 문답식, 또는 글쓰기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젠더법학 교육방법론의 논의는 언급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젠더법학의 방법론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하에서는 다양한 교육방법론이 가지는 장·단점을 검토하고자 한다.

### (1) 젠더관련 실정법 교육과 젠더법학 이론의 수업

젠더법학의 목적을 법체계에서 젠더 분석을 위한 사고의 훈련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기존의 실정법 관련 이론의 교육은 불필요한 것인가? 결론부터 답한다면 젠더법학의 교육에서도 실정법 이론 교육은 필요하다고 본다. 실정법은 젠더법학의 중요한 분석대상이다. 따라서 실정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원칙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이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분석도 사실상 많은 것을 분석해 내기 어렵다. 이상적인 것은 헌법, 민법, 형법 등의 기본과목을 통하여 이론적 법지식을 습득하고 젠더법학이 추구하는 사고체계에 대한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학부과정에서 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은 젠더관련 실정법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젠더법학 수업을 참여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기초적 법리에 대한 강의가 전혀 없으면 관련된 실정법의 어느 부분이 젠더 관점에서 문제인지에 대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젠더 관련 실정법에 대한 이론적 법지식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실정법이 젠더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법학의 방법론적 접근에 대한 수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이에 대해서는 이하 (5)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 교육의 구성에서 참조).

### (2) 사례 중심의 토론·문답식의 교육

젠더법학은 법학지식을 전달하는 과목이 아니라 법체계와 법현상에 대하여 젠더관점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과목이므로 기본적 법학지식

그 자체는 젠더법학의 이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헌법, 민법, 형법 등의 실정법 교육만으로 젠더법학이 지향하는 바가 구현될 수 없다.

젠더법학의 방법론과 이를 통한 법학의 기존의 인식 방법과 차별화된 관점을 검토하기 위한 학습방식으로 먼저, 사례 중심의 토론식 교육 방법론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법학전문대학원 도입과정에서 자주 논의되었던 방식이며, 젠더법학의 교육 방법론으로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사례를 통한 토론방식의 수업을 위한 자료는 대법원 판례를 학습하는 것보다는 사실관계를 좀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하급심 판례를 다루는 것이 젠더법학이 추구하는 바에 부합하다고 본다. 또한 다양한 쟁점이 포함된 문제 중심의 수업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sup>24)</sup> 판례는 이미 결론이 내려진 사안에 대한 접근이기 때문에 사실의 중요성 보다는 규범의 해석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전달하는 경향이 강하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역동적 사실관계에서 쟁점을 추출하고 이것에 현행 법 이론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젠더문제를 검토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특히 대법원 판례는 사실 확정 단계에서 은닉된 성편견적 사고를 지적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또한 대법원 판례는 이미 적용된 법이론 중심으로 내용이 구성되기 때문에 학생들 스스로가 사실단계에서 관련되는 법률쟁점을 정리하고 여기에 이론을 유추·적용하여 이를 통해 문제되는 이론을 학습하는 입체화된 자료로서의 매력은 떨어지는 것이다.

문제 중심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혼란스러운 일상적 상황의 단면을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여기에 숨어있는 법률적 쟁점을 스스로 찾아내고 그에 따라 문제 해결을 하도록 과제 부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문제 중심 수업을 통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불명확한 행동에서 야기되는 일상적 혼란에 내재된 욕구와 성편견적 가치관에서 비롯된 행동방식을 분석하고 이에 대하여 법률을 적용하였을 때 그 효과가 중립적으로 구성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반복하는 것

24) 문제중심 교육 방법론에 대한 소개는 이상돈, 앞의 책, 715면.

을 수업과정으로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소설적 상상력이 요구된다<sup>25)</sup>.

사례중심의 토론수업이 가지는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학전문 대학원 수업에서 사례 중심의 토론 수업을 하는 것은 상당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항상 담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법체계에서 젠더분석이라는 문제는 대다수의 학생들에게는 여전히 낯선 문제인 것으로 나타난다. 젠더분석이라는 낯선 주제에 대하여 토론을 유도하는 것은 효율성 면에서는 그다지 적절한 방법론은 될 수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사례에 대한 토론을 통한 분석 방식을 젠더법학의 방법론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강의자는 강의의 양적 측면과 질적 측면에 대한 적절한 조화를 이루어 내야 할 것으로 본다. 즉 특징적이고 대표적인 소수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이렇게 사례에 대한 집중적 연구를 시도 할 경우 먼저 수강생들에게 사전에 강의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것은 젠더법학 수업에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필자가 지난 학기 소수자인권법 수업에서 시도한 방법이다. 먼저 쟁점이 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문제와 문제를 접근할 때 필요한 관련 법규를 강의 일주일 전에 e-class를 통하여 개시하고, 양 당사자가 분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파악하도록 한다.

실제 강의 시간에는 제시된 문제와 기초 자료를 전제로 ①당사자의 입장 정리, ②쟁점이 되는 사안에 대한 정리, ③제시된 법규정을 적용할 때의 결과 등

25) 사실 사례 중심의 수업에서 사례가 판례를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최선은 아니라고 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젠더법학에서 중요한 것은 일상에서 법의 인식과 젠더 정치를 읽어내는 훈련이 이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부부의 갈등과 용서의 과정이 반복되는 지점에서 이혼법에 대한 젠더분석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젠더 법학 교육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도리어 평범하고 일상속에 나타나는 부부의 갈등, 화해, 및 용서의 과정을 법적으로 재해석 해보고 현행 실정법을 적용해 보고 실정법의 어느 지점에 젠더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지 학생들 스스로가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수업의 자료가 되는 사례를 소설에서 가져오는 것이 때로는 효율적인 경우도 있었다.

을 일차로 검토한다. 다음 법규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범주체들의 특수성에 비추어 현행 법체계가 불합리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검토한다. 나아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이론적 재구성의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어떠한 방향으로 개념과 해석론을 재정립하는 것이 정의롭다고 느껴지는지, 그리고 평등이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토론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명확하다고 생각했던 사실관계에 불명확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하며, 사실의 확정 단계가 가지는 정치적 특성과 편견을 발견하기도 한다. 또한 확정된 사실에 법규를 적용하는 것이 각자의 법 감정과 괴리가 있음을 이해하기도 하였다. 사례 분석과 토론 방식으로 젠더법학 수업을 진행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사전적 준비가 학생들과 상호 의사소통 되어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토론은 사실상 공허하고 비효율적일 것이다.

사례 중심의 토론수업이 가지는 자발적 참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유사한 방법의 하나로 질문과 답변 방식의 수업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주어진 사례에서 쟁점이 될 만한 것들을 학생들이 찾아내도록 시도하고, ②구체적인 쟁점을 학생들이 찾아내면 그 각각의 쟁점을 질문으로 제시하고 학생들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가지는 장점은 첫째, 구체적인 사례 이면에 숨겨져 있는 추상적인 이론이 무엇인지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수 있었다. 둘째, 다양한 쟁점들 중에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와 주체들 개인의 선택을 보장해야 하는 문제를 희미하게나마 구별하는 사고를 경험할 수 있었다. 셋째, 구체적 사실관계를 통하여 나타나는 쟁점에 대한 다양한 입장에서 각자의 입장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반면에 이러한 계속되는 질문과 답변 수업에서 극복해야 할 점으로 생각되는 것은 쟁점의 이면에 숨어 있는 추상적인 이론에 대하여 학생들이 전혀 생소한 경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의 담당자가 적절한 시

간 안배를 구현하지 않을 때 질문과 답변의 흐름이 단절될 수 있다. 또한 구체적인 사례로 문제의식을 제시할 경우 이에 대한 이론 전달이 취약하게 되어 학생들이 전체적인 통합된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 (3) 글쓰기와 세미나 중심의 방법론

젠더법학이 가지는 범위적 특성, 즉 입법과정에서부터 입법을 근거로 하는 다양한 정책의 구성 및 권리의 질차적 구현의 문제에 이르는 광범위하고 다층적인 문제를 검토하기 위한 좋은 방법으로 글쓰기와 세미나를 병행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업 방식이 젠더법학에 적합한 또 다른 이유는 젠더법학이 법체계에서 양성 공존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하여 비가시화된 여성의 경험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법체계에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아직 그러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문제를 제기하고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현황을 가시화 하고 이를 토대로 그러한 공간에 채워야 할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는 방식을 통하여 젠더법학이 추구하는 바를 구현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광범위한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특히 글쓰기를 통하여 이해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하여 법체계에 공간을 마련할 경우 기존의 법체계와 어떻게 관계를 조율할 것인지 경계 구축의 문제 등을 글쓰기와 세미나를 통하여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sup>26)</sup>

26) 여기서 의미하는 글쓰기가 어떠한 방식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본다. 여성주의 서사연구의 고전적 문헌인 내러티브 그룹(The Personal Narratives Group)에 따르면, “여성들의 개인적 삶의 기록인 생애서는 개인적 행위 경로의 논리와 더불어 그것이 펼쳐지는 체제수준의 제약의 효과를 함께 조명할 수 있게 해 준다”, *The Personal Narrative Groups, Interpreting Women's Lives : Feminist Theory and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6. 그러므로 이러한 유형의 글쓰기를 진행하는 것은 여성이 처한 현실과 행동방식에 대한 논리적 설명을 제공하고 여성의 경험을 가시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주의 연구자들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젠더법학이 비가시화된 여성의 경험이 수용될 수 있는 공간을 법체계에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여성의 입장을 가시화하고 있는 개인의 내레이션만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본다. 내레이션은 여성이 서 있는 지점을 확인해 줄 수는 있으나 이를 토대로 법체계에 공간을 마련하는 작업은 새로운 단계이다. 젠더법학 수업의 글쓰기는 양자를 모두 포함하여야 할 것

글쓰기와 세미나를 통하여 실정법과 판례에서의 젠더문제만이 아니라 입법 과정에서부터 나타나는 젠더의 문제를 다양하게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글쓰기와 세미나 중심 수업이 가지는 장점은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젠더법학이 가지는 다양한 사회과학과의 접점을 찾을 수 있고,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의 개념과 이론이 법의 영역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하여 젠더법학의 이론적 깊이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글쓰기와 세미나를 통한 수업 방식은 전제로서 글쓰기에 대한 검증이 함께 이루어 지지 않을 경우 학습 효과가 사실상 크지 않은 형식적인 정도에 머무르게 될 수 있다. 특히 수강인원이 다수인 경우 글쓰기와 세미나를 통한 학습은 항상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또한 관련되는 주제의 기본적 법 지식이 있는 학생과 없는 학생 사이에서 글쓰기를 일정한 정도까지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글쓰기 과정에서 적절한 수준의 논점이 도출되지 않았을 경우 사실상 글을 쓰고 발표를 하고 발표를 토대로 가시화되지 못한 부분을 인식하도록 하거나 새로운 대안을 구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축소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 한 학기 동안 글쓰기와 세미나 진행의 방식으로 수업을 해본 결과 가장 중요한 것은 글쓰기에 대해 교수가 함께 과정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이었다. 즉 학기 초 몇 개의 주제를 글쓰기와 세미나 진행 방식으로 수업을 할 것인지 결정하고 수강인원을 파악한 후 다루어야 할 주제의 수에 맞도록 학생들의 조를 편성하였다. 처음 3-4주간 이론에 대한 수업을 하는 동안 발표를 담당할 조별 학생들은 관련 주제에 대한 글쓰기를 하고 발표 전까지 담당 교수와 개별 미팅을 통하여 전체적으로 함께 수정하고 추가할 내용 등을 다듬어 가는 과정을 수행하였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의 구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이공계 출신 학생들은 아직 자료에의 접근 방식이나 목차를 잡고

---

이지만 그 주요 지점은 후자에 있다고 본다.

논의를 풀어가는 방식 등에 대하여 상당히 생소하다고 느끼는 문제를 이야기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젠더법학의 특징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 편성은 남녀 비율이 절반정도씩, 그리고 법학과 비법학 출신이 어느 정도 고르게 편성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발표를 담당하는 팀과의 미팅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여, 희망하는 팀에 대해서만 했는데, 팀별로 차이가 있었다. 특히 팀 내부에서의 토론과 의견 대립이 심했던 팀은 좀 더 빈번하게 미팅을 희망하였다.

#### (4) Legal Clinic 교육방법론과 젠더법학 교육

젠더법학의 중요한 특징의 하나를 실천법학적 속성으로 이해한다면, 학생들이 이 교과 과정에서 젠더법학의 사유방법론을 실제 법률 사례에서 실행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본다. 이를 위한 교육 방법론으로는 임상교육이 활용되는 것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로스쿨에서 임상교육의 방법은 로스쿨 내 in-house clinic, 외부연수(externship), 모의훈련(simulation)의 세 가지 유형으로 구별되며 대부분의 로스쿨은 이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특히 로스쿨 내 in-house clinic은 로스쿨 학생들이 학생 변호사로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의뢰인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이다.<sup>27)</sup> 임상교육을 이해하는 방식은 변호사가 무엇을 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함에 있어서 미시이론과 거시이론으로 두 가지로 구별된다. 이 중 거시이론은 가치중심으로 학생들로 하여금 법제도 속에서 변호사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사회정의에 대한 책임감을 갖도록 교육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위하여 이론이 실천을 형성하고 실천이 이론을 형성하는 로어링을 중심으로 학생들은 문제해결을 위해 의뢰인을 돕는 서사(敘事)와 사건이론을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맥락의 중요성을 배우고 문제

27) 전해정, 「미국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결합한 법여성학교육의 방법론 연구-가정폭력 클리닉을 중심으로-」(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10-12면.



가 발생한 사회적·정치적·경제적·제도적 맥락의 효과를 인식하며 평가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윤리적 로어링과 가치 지향적 로어링을 통해 임상학생들은 주로 가난한 유색인 여성과 같은 소외된 사람들을 대리하는 과정을 경험하며 공익을 실현하는 법제도를 개발한다. 권력과 권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 하면서 학생들은 사회정의와 공정성을 배우며 이러한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변호사가 담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학습한다.<sup>28)</sup>

거시 중심의 임상법학교육을 구현하기 위한 교육 방법론으로 강조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험에 대한 강조이다. 로어링을 통한 학습이란 경험으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학생들은 임상에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얻은 경험으로부터 학습하게 된다. 둘째, 비판적 성찰이다. 가치를 지향하는 임상법학은 실무에 존재하는 기존의 패러다임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데 있다. 비판적 성찰은 훌륭한 변호사의 본질적 특성으로 간주되는 항목이다. 셋째, 책임윤리에 대한 강조이다. 임상교육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은 강의실에서 제시되는 가상의 윤리적 딜레마를 현실세계에서 작업을 하고 해결하면서 윤리적 로어링의 성향을 구축할 수 있다. 넷째, 간학문적 학습을 강조한다. 임상교육은 인지심리학, 수사학, 경제분석학, 고용관계, 사회사업, 문헌분석 등 간 학문적 자료가 사용된다.<sup>29)</sup>

임상법학 교육이 추구하는 경험, 비판적 성찰, 책임윤리 및 간학문적 학습방법 등은 젠더법학 방법론과도 공유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임상법학의 틀 속에서 젠더법학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킬 수 있다.<sup>30)</sup> 특히 젠더법학을 단지 이론적인 대안으로서가 아니라 향후 법률가가 되고자 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젠더법학이 실무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 교육할 수 있는 좋은 방법론이 될

28) 전해정, 위의 글, 14면.

29) 전해정, 위의 글, 25-28면.

30) 또한 가정폭력 크리닉 사례를 가지고 임상법학 교육 방법론을 통하여 여성주의 사고이론인 맥락추론이 어떻게 구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예로서, 전해정, 「로어링을 통한 맥락추론교육」, 『법철학연구』 제11권 1호(한국법철학회, 2008), 113-129면.

수 있다고 본다. 다만 제한된 학기 내에 임상법학 교육방법론을 통한 교육만으로는 다양한 주제를 다룰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학기 중 강의실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방법은 위에서 언급한 사례 중심의 토론과 글쓰기 및 세미나 방식을 사용하면서, 나아가 Legal Clinic 프로그램과 병행된 임상법학적 방법론을 사용한다면 교육방법은 젠더법학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원수단으로 유용할 것으로 본다.

### (5)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젠더법학 교육의 구성의 예시

언급한 젠더법학과 기초법의 관계에서 논의한 것처럼 젠더법학은 첫째, 기초법의 다양한 분야들, 즉 법철학, 법사회학 및 법심리학 등의 분야 등과 총론적 이론을 공유한다. 둘째, 동시에 입법과정에서부터 현행 실정법 체계의 해석과 권리의 절차적 구현의 과정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젠더법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고민은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한 학기의 수업동안 유기적 관련성을 가지고 연결되는 지점을 부각시킬 수 있을지에 관한 것이다. 젠더법학의 특징상 사상적 부분만 강조하거나 실정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만 논의를 국한하게 되면 법학에서 젠더문제를 분석하는 기본적 이론이 갖추어지지 않는 한계를 나타내기 쉽기 때문이다. 광범위한 범위를 사실 16주라고 하는 제한된 시간에 전달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고 법과 젠더의 상호관계를 검토하는 하나의 트랙을 만들기 위한 방법으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기간을 제외한 14주를 총론적 수업과 각론적 부분으로 구별하여 강의 내용과 방식을 차별화 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명시적으로 구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학기 시작과 함께 여성주의 사상과 흐름 그리고 법학과의 유기적 접점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왔는지 역사적 흐름과 함께 이론적 수업을 한다. 이 단계의 수업에서 젠더법학의 정체성과 무엇에 대하여 어떠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법체계를 검토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한다.

여성주의 사상에 대한 흐름을 수업하는데 어려운 점은 현대 여성주의의 정치

이론의 그 전제와 결론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이다. 물론 공리주의 이후 정치사상의 흐름의 다양성은 부연설명을 요하지 않는 현상이지만, 여성주의 정치이론은 이와 같이 상이하고 다양한 흐름이 모두 여성주의 이론 안에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양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즉 자유주의적 여성주의, 마르크스주의적 여성주의 뿐만이 아니라 자유지상주의적 여성주의 입장도 존재하며, 여성주의 영역에는 정신분석학 혹은 탈구조주의 이론을 가지고 여성의 종속을 설명하는 입장에 이르기까지 실로 방대하다.<sup>31)</sup>

이처럼 여성주의 정치사상안에서 다양한 정치사상의 흐름이 모두 전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성주의 사상을 수업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한다. 여성주의 사상의 발생과 흐름이 다분히 기존의 사상적 흐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며 구축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사상적 흐름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학부 4년간의 다양한 전공을 경험하고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들에게 무엇을 기준으로 여성주의 사상의 흐름을 전달하여야 하는지는 상당한 난제이다.

젠더법학의 사상적 배경을 시대별로 특정한 사상사를 중심으로 흐름을 전달하는 것 보다는 주제 중심으로 사상과 이론의 변화를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학생 개개인의 학부 전공이 다른 현실에서 효율적인 전달 방식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성적 평등과 차별, 공·사 구분과 법 그리고 배려의 윤리와 정의 및 존엄성 구현의 과제 등으로 주제를 잡고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법체계의 한계와 문제의식을 전달하는 방식이다.

또한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에 대한 이론 교육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법과 정치의 관계, 여성주의 사상과 젠더법학의 관계, 법에서 젠더문제를 접근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이론적 설명으로 실정법과 판례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시도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 확립된 후 개별주제에 접근한다. 젠더법학에서 다

31) 여성주의 정치철학에 관한 논의는 윌 김리카 / 장동진,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동명사, 2002), 521면 이하.

루는 개별 주제의 범위로는 노동, 가족, 그리고 섹슈얼리티 세 가지 영역이 해당한다. 각각의 범주를 다루는 이론적 토대는 도입부분에서 문제제기한 성 평등과 차별/종속이론, 공·사 분리와 법, 및 배려윤리와 정의 등의 문제가 다시 노동, 가족, 및 섹슈얼리티의 영역에서 구현되는 방식과 이들이 법의 영역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분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특정 사안에서 기존의 결론과 여성주의 법학 방법론을 적용하여 대비하였을 경우 어떻게 그 결론이 다르게 이해 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이 요구된다.

## IV. 젠더법학 교육의 한계

### 1. 물리적 제약

16주 수업에서 일주일 3시간 수업을 진행하는 한계는 무엇보다도 시간적 한계이다. 이론식 강의 수업은 젠더법학의 특징상 지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기 때문에 가능하면 문제 중심의 사례수업이나 글쓰기와 세미나를 통한 수업 양자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시간적 제약이 항상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접근을 어렵게 한다. 특히 젠더법학은 정해진 교과 내용을 이해하고 전달하기 보다는 관점에 의한 분석 과정이 함께 이루어지는 과목이므로 ①관련되는 사안에 대하여 관련법의 내용을 알고 적용을 할 수 있어야 하고, ②적용과정에서의 젠더 문제를 인식할 수 있어야 하고, ③젠더 관점을 적용할 때 어떻게 관련내용이 재정립되어야 하는지를 다루어야 하므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거쳐야 하는 분석과정이 매우 다층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 과정을 토론을 통하여 유도하는 것은 강의자에게 상당한 시간적 제약을 느끼게 한다.

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어려움은 수강인원의 규모이다. 아직 긴 경험이 축적된 상태가 아니므로 어느 정도의 수강생의 규모가 이 수업에 적절한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또한 학교마다 정원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절한 수강인원을 확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론 중심 또는 문답식 수업에서 적어도 학생들 모두가 관련 주제에 대한 생각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를 전제하면 지나친 대규모 수강인원은 수업방식을 구현하는데 한계를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토론식 수업은 항상 참여자의 소극적인 태도가 문제가 된다. 따라서 발표와 세미나 수업에서는 토론을 주도하는 방식을 강의담당자가 하는 것 보다는 발표를 담당하는 팀이 하도록 하는 것도 참여를 유도하는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강의담당자에 의한 토론 유도는 자칫 정답에 대한 지나친 압박으로 이어지기도 하기 때문이다.

다만 발표팀이 토론을 유도하는 것은 논점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주제로부터 멀어지게 될 위험 또한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발표를 담당하는 팀과 교수와 사전에 논의의 주제를 명확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 발표팀이 토론을 진행할 때 강의를 담당하는 교수는 전체적인 흐름을 관찰하고 방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개입할 필요는 없지만 일정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 간단히 논의의 전제가 되는 필수적인 설명을 하는 것이 원활한 토론을 위하여 필요하다. 토론에 있어서 여전히 다수의 학생이 소극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가끔적이면 수강인원이 소규모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 소규모 수업으로 진행될 때 수강자들의 전체적인 참여를 기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2. 심리적 공감의 문제

젠더법학은 법체계에서 비가시화 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가시화하여 젠더 중립적인 법질서를 구축하고 법체계에서 다양한 성별이 공존하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법체계에 존재하는 의도된 차별의 문제만이 아니라 관습화된 자연스러운 선택이 가져오는 차별적 현상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해왔다. 젠더법학이 비가시화된 여성의 관점을 통하여 법과 판례를

분석하여 성별 공존의 공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명시적인 차별만이 아니라 내재된 무의식의 차별을 분석해야 하며 이를 통하여 성별 공존의 공간으로 법체계를 재편성하려는 노력이 따르는 작업이다. 문제는 내재된 무의식의 차별이 개인의 이중기준과 교묘하게 결합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사실 누구도 차별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누구도 여성이 차별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이 여성에 대하여 차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규정하지도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관련한 사안들에서 수강학생들은 낯선 느낌을 전달 받는다는 점을 지적한다.

사실 젠더법학의 수업이 가능하다면 남녀 비율이 균형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이러한 심리적 접근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 수업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여성주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학생들도 함께 참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서로의 생각의 차이를 토론을 통해 드러낼 때 비로소 각자의 내재된 의식에 새로운 생각을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젠더법학을 한 학기 수업하는 것을 통하여 어디까지 이루어 내는 것을 교육의 목적으로 해야 할지는 답하기 어려운 과제이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짧은 경험과 상대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학부에서의 범여성학 수업의 경험을 통하여 느끼는 것은 젠더법학은 수강학생들에게 법체계의 성 편향성과 성차별에 대한 각자의 무의식에 내재된 이중적 기준을 인식하고 양성 공존하는 공간을 위한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까지일 것이다. 공감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젠더법학 수업과정에서의 토론은 성별간의 이익투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정리해야 하며 공존의 틀을 마련하기 위한 균형 잡기로 자리매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V. 맺음말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던 사항이다. 개혁을 통하여 그동안 사법 시험을 준비하기 위하여 왜곡되어온 교육을 바로잡고 다양한 전공을 경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법학교육을 실시하여 법률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사실 이러한 의도에 의하여 법학교육을 구성한다면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기초법학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될 수밖에 없다. 젠더법학의 교육도 이러한 차원에서 요구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은 원래의 추구하던 이론과 실용성이 함께하는 교육방법론을 찾아내는 어려움만이 아니라 동시에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받는 시간적 제약과 마주하면서 적절한 교육방법론을 모색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젠더법학이 어떠한 교육방법을 사용하여야 본래의 의미를 살릴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그러나 기초법학을 ‘인간·역사·사회와의 연관 속에서 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학습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적이고 대상적인 분야로 기존의 법적 대응을 뛰어넘어 새로운 법형성과 법 발견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기초능력을 배양하는데 필요한 학습’으로 이해한다면 실질적으로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법률가를 배출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교육이다. 특히 기초법학의 교육은 법률가로서의 능력을 구축하는데 기본과목에 대한 교육과 양대 축을 구성하는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된다. 젠더법학의 교육이 가지는 의미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특히 젠더법학은 추상적 사상에서부터 가장 현실적인 구체적 정책의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법이 어떻게 개인의 삶과 다양하게 관계하는지 볼 수 있는 중요한 교육방법론이 될 수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육은 변호사 시험 대비라는 목적과 향후 법률가로서의 마주하게 될 법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하는 목적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구축하는지에 의하여 적정성이 판단될 것으로 본다. 양자에 대한 병행교육이

적절히 구현될 때, 사실상 법에 대한 이해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시험과목과 비 시험과목으로 구별되는 분류를 떠나 가장 효율적으로 법률가를 양성하고 또한 시험을 준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고 본다. 결국은 가장 단기간 동안 학생들이 법률적 사고에 익숙하게 되는 것이 궁극적으로 시험에 대비하기에도 그리고 그 이후의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서도 효율적인 교육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초법학의 교육과 기본과목의 교육의 목적이 구별될 이유는 없다고 보며 젠더법학은 법적 분석력이 우수한 법률가를 만들어 내는 교육과정으로 이에 기여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고봉진, 「기초법의 교수방법론-체계로서 기초법과 의사소통으로서 기초법 강의」, 『법철학연구』 제11권 제2호, 한국법철학회, 2008.
- 김선옥, 「법여성학의 연구동향과 과제」, 『서강법학』 제4권, 서강대학교법학연구소, 2002.
- \_\_\_\_\_, 「성주류화와 법」, 『젠더법학』 제1권 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2009.
- 김숙자, 「여성교육과 법여성학-한국의 법여성학을 중심으로-」, 『여성가족생활연구』 제11집, 명지대학교 여성가족생활연구소, 2007.
- 김엘림, 「법여성학 교육의 사례」, 『한국젠더법학발표집』, 2006.
- 김태선/오정진/조은희/차선자, 『법여성학』, 세창출판사, 2011.
- 김춘봉, 『여성의 법률』, 삼협문화사, 1956.
- 박이문, 「도덕적 개념으로서의 합리성」, 『철학과 현실』 제16호, 철학문화연구소, 1993.
- 박의경, 「여성학적 인식론의 발견과 그 사상사적 지평」, 『동아시아와 근대, 여성의 발견』, 청어람미디어, 2004.
- 박정기·김연·김인유, 『여성과 법률, 법문사』, 2006.
- 배경숙, 『여성과 법률』, 박영사, 1972.
- 수잔 웨스터버그 프래거, 「부부재산법에 대한 시각변화」, 『페미니즘의 시각에서 본 가족』.



- 양현아, 「여성의 ‘목소리’와 법여성학 방법론」,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04.
- 윌 키피카 / 장동진 역, 『현대 정치철학의 이해』, 동명사, 2002.
- 이상돈, 『기초법학』, 법문사, 2010.
- 이은영, 「한국 여성관련법의 변천과 법여성학의 전개」, 『가지 않은 길, 법여성학을 향하여』, 사람생각, 2004.
- \_\_\_\_\_, 『법여성학강의』, 박영사, 2006.
- 이정모/손지영, 「법인지과학 : 법영역의 인지과학적 조명」, 『법과 인지과학의 대화』,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학술회의 자료집, 2010.
- 이재인, 「서사의 개정과 의식의 변화」, 『한국여성학』 제22권 제2호, 한국여성학회, 2006.
- 전해정, 「로여링을 통한 맥락추론교육」, 『법철학 연구』 11권 1호, 한국법철학회, 2008.
- \_\_\_\_\_, 「미국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을 결합한 법여성학교육의 방법론 연구—가정폭력 클리닉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8.
- 차선자, 「한국에서 여성에 대한 법학교육과 법과 젠더의 관계」, 『법학논총』,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006
- 최대권, 『법학교육·법학교육방법론, Law School을 중심으로』, 박영사, 2003.
- 최일숙, 「미국 여성주의 법학의 소개」, 『젠더법학』 제1권 제1호, 한국젠더법학회, 2009.
- 한국여성개발원, 『각국의 공적 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1993.
- Bloom, *Under the Sign of Hope : Feminist Methodology and Narrative Interpretation*, New York,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8, pp.3-7.
- Marthas Chamallas, *Introduce to Feminist Legal Theory*, New York : ASPEN, 2003.
- Sacksofsky, *Was ist feministische Rechtswissenschaft?*, ZRP 2001, 412.
- The Personal Narrative Groups, *Interpreting Women's Lives : Feminist Theory and Personal Narrative*,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89, p.6.
- Tove Stang Dahl, *Women's Law*, Norwegian University Press, 1988.

<Abstract>

## Education of Feminist Legal Theory in Law School

Cha, Seon-Ja\*

In many cases the current legal system does not realize legal neutrality, but instead shows its gender bias. The reason is that we don't analyze the gender effect in the legal system. On that basis, feminist legal theory tries to introduce gender effect analysis in the legal system and in this way tries to realize legal neutrality.

Feminist legal theory deals with gender effects from the legislation process to the fulfillment of rights. Therefore the education of feminist legal theory should not only be focusing on the interpretation of law, but should also concentrate on a discussion about the gender effect in complex legal cases. It is a much more effective way to understanding the relation between gender and law. Writings and seminars are also good education methods to understanding the gender effect in the legal system. In this way the students can ascertain immanent gender bias and try to suggest an alternative legal system in which gender effect is supplemented.

**[Key Words]** feminist legal theory, gender effect, legal system, neutrality

접수일 : 2011. 4. 1, 심사일 : 2011. 4. 5~4.12, 게재확정일 : 2011. 4.20

---

\* professor of law, Pusan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Law